



특허 Q&A

Q.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?

A. 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에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PCT회원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고, 구체적인 명단은 www.wipo.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▣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

-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.
-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함.
-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.

▣ PCT 국제출원의 특징

-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,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, 검증단계(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)를 거친 후,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됨.
-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.
-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(우리나라)을 지정할 경우, 선출원(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)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됨.

Q.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습니까?

A. PCT 전자출원 시 국제출원료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. PCT-SAFE Easy Mode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100CHF이 감면됩니다. PCT-SAFE Full Electronic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300CHF이 감면됩니다.

그리고, 국내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※ 국제출원비용보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 “www.kipo.go.kr → 특허마당 → PCT → PCT국제출원 지원제도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